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측량업자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9047호, 2022. 11. 15., 일부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제정(2023. 6. 11. 시행)에 따라 현행 규정의 “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명확히 함(안 제35조)
- 나. 측량업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방법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4조, 별표 8의2)
- 다.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방법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9조, 별표 11의2)

라. 측량업 및 성능검사대행업자 위반행위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안 별표 8의2, 별표 11의2)과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위반행위별 부과권자 등을 명확히 함(별표 13)

마. 그 밖에 영문자 측량기기 이름을 한글과 병기하여 알기 쉽도록 정비함
(안 제97조, 별표4, 별표8, 별표1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부처합의 전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을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과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과징금 부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된 사람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징금 부과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간격으로 분할납부 기한을 정하되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97조제1항제5호 중 “지피에스(GPS)”를 “지엔에스에스(GNSS)”로 한다.
제99조의 제목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을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과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과징금 부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된 사람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징금 부과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간격으로 분할납부 기한을 정하되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3조제1항제34호 중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6.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권자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05조 중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부과기준은”을 “부과기준과 부과권자는”으로 한다.

별표 4의 1.의 장비란 제1호 중 “GPS”를 “지엔에스에스(GNSS)”로 한다.

별표 12의 1.의 장비란 제1호 중 “GPS”를 “지엔에스에스(GNSS)”로 한다.

별표 8의 측지측량업의 장비란 제3호 중 “GPS”를 “지엔에스에스(GNSS)”로 하고, 같은 표 공공측량업의 장비란 제3호 중 “GPS”를 “지엔에스에스(GNSS)”로 하며, 같은 표 일반측량업의 장비란 제1호 중 “GPS”를 “지엔에스에스(GNSS)”로 하고, 같은 표 연안조사측량업의 장비란 제3호 중 “GPS”를 “지엔에스에스(GNSS)”로 하며, 같은 표 공간영상도화업의 장비란 제2호 중 “GPS”를 “지엔에스에스(GNSS)”로 하고, 같은 표 영상처리업의 장비란 제3호 중 “GPS”를 “지엔에스에스(GNSS)”로 하며, 같은 표 지하시설물 측량업의 장비란 제3호 중 “GPS”를 “지엔에스에스(GNSS)”로 한다.

별표 8의2 및 별표 1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제목 중 “부과기준”을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로 하고, 제1호가목 전단 중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과태료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과

태료를 부과받은”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전에 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13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로 하며, 같은 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을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더할 수 있다”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3 제1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개별기준 및 부과권자”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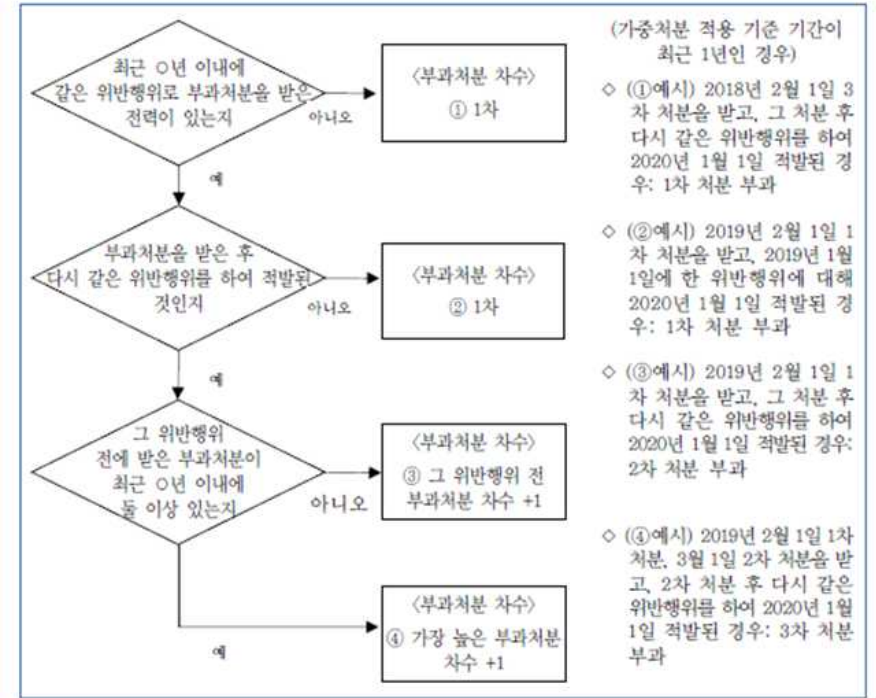
다만, 그 더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은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3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권자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 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60	120	23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경우	법 제111조 제2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단, 지적측량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적소관청장	40	75	150
다. 법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111조 제2항제2호	해당 측량업 등록한 기관의 장	30	60	12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2항제3호	해당 측량업 등록한 기관의 장 단, 지적측량수행자의 경우 해당 지적소관청장	35	70	140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2항제3호	해당 측량업 및 성능검사대행자를 등록한 기관의 장	35	70	140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2항제3호	시·도지사 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35	70	140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1조 제2항제4호	해당 측량업 등록한 기관의 장 단, 지적측량수행자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적소관청장	30	60	120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제3	법 제111조	해당 측량업 및	30	60	120

호 및 제4호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2항제4호	성능검사대행자를 등록한 기관의 장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1조 제2항제4호	시·도지사 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30	60	120
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111조 제2항제5호	국토교통부장관 단, 지적측량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적소관청장	40	75	150
카.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3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단,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경우 시·도지사	8	15	30
타. 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3항제2호	해당 측량업을 등록한 기관의 장	13	25	50
파.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3항제3호	해당 측량업을 등록한 기관의 장	60		
하.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1조 제3항제4호	해당 측량업을 등록한 기관의 장	38		
거.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3항제5호	시·도지사	10	20	40
너. 법 제93조제6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3항제6호	시·도지사	30		
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1조 제3항제7호	시·도지사	30	60	100



부 칙

이 영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비고 전단을 1호로 하고, 전단중 “제2호파목”을 “제2호다목”으로 하며,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별표 8의2]

측량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의 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2호 개별 기준 각 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 같은 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하되, 그 가중한 기간 또는 금액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은 1년 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영업정지 처분

가) 위반행위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나) 과징금을 부과한 위반행위를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2) 과징금 부과처분

위반행위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는 경우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또는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더할 수 있다. 다만, 그 더한 기간 또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기간 또는 금액은 1년 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공공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또는 금액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1 차		2 차		3 차	
		처 분 기 준	대 체 과 징 금	처 분 기 준	대 체 과 징 금	처 분 기 준	대 체 과 징 금
가. 고의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1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나.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1호	영업 정지 4개월	1천6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2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3호	경고	해당 없음	경고	해당 없음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마.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법 제52조제1항 제4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바.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45조의 업무위반을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6호	영업 정지 3개월	1천2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사. 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측량업자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	법 제52조제1항 제7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아.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8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자.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9호	영업 정지 3개월	1천2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차. 법 제51조를 위반해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10호	영업 정지 2개월	8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카.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11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타.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13호	영업 정지 3개월	1천2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파.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14호	영업 정지 3개월	1천2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하.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14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거.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52조제1항 제15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비고 과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그 처분을 요구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른다. 다만, 처분기간 또는 금액은 1년 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1의2]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99조 관련)

1. 일반 기준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2호 개별 기준 각 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 같은 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각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하되, 그 가중한 기간 또는 금액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은 1년 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업무정지 처분

가) 위반행위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나) 과징금을 부과한 위반행위를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2) 과징금 부과처분

위반행위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는 경우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또는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더할 수 있다. 다만, 그 더한 기간 또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기간 또는 금액은 1년 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공공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2. 개별 기준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1 차		2 차		3 차	
		처 분 기 준	대 체 과 정 금	처 분 기 준	대 체 과 정 금	처 분 기 준	대 체 과 정 금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 제1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나.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 제1의2호	경고	해당 없음	업무 정지 2개월	2백만원	업무 정지 2개월	2백만원
다.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96조제1항 제2호	업무 정지 2개월	2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라. 제95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 제4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 제5호	업무 정지 6개월	6백만원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 제6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사.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 제7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아.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 제8호	업무 정지 3개월	3백만원	업무 정지 6개월	6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 제8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현행	개정안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측지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측량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측량업은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u>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u>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이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측량업을 특별자치도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u>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① ----- ----- ----- ----- ----- ----- <u>시·도지사</u> ----- ----- ----- ----- ----- ----- <u>제주특별자치도의</u> ----- ----- ----- <u>제주특별자치도지사</u>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u>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u>) <u><신설></u>	제44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u>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u>

(생략)

<신설>

<신설>

<신설>

금의 처분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납부 기한과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신설>

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과징금 부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

<u><신 설></u>	<u>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u> <u>또는 대도시 시장이 인정하는</u> <u>경우</u>
<u><신 설></u>	<u>⑦ 제6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u> <u>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하여 납</u> <u>부하게 된 사람은 제3항에 따</u> <u>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5일 전까</u> <u>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u> <u>식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u> <u>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u> <u>를 첨부하여 과징금 부과기관의</u> <u>장에게 신청해야 한다.</u>
<u><신 설></u>	<u>⑧ 제6항 따라 납부기한을 연</u> <u>장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u> <u>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u> <u>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납부하</u> <u>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통지</u> <u>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u> <u>월 간격으로 분할납부 기한을</u> <u>정하되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u> <u>할 수 없다.</u>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① ----- ----- ----- ---

1. ~ 4. (생 략) 5. <u>지피에스(GPS) 수신기: 3년</u> 6. (생 략) ②·③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지엔에스에스(GNSS) ---</u>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u><신 설></u> (생 략) <u><신 설></u>	제9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③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과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u><신 설></u>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 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과징금 부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신 설>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된 사람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징금 부과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간격으로 분할납부 기한을 정하되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

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
1. ~ 33. (생략)	1. ~ 33. (현행과 같음)
34.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u>등록취소 및 영업정지</u> 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u>등록취소 및 영업정지</u> 사실의 공고	34. ----- ----- <u>등록취소, 영업정지</u>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u>과징금 부과처분</u>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u>등록취소, 영업정지</u> 및 <u>과징금 부과처분</u> ----- -----
35. ~ 45. (생략)	35. ~ 45. (현행과 같음)
46. 법 제111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46.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u>부과권자인</u> 과태료의 부과·징수
47. ~ 60. (생략)	47. ~ 60.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u>부과기준</u> 은 별표 13과 같다.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u>부과기준과</u> <u>부과권자</u> 는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연락처	(044) 201 - 3480